

任員退職金支給規程
(임원퇴직금지급규정)

주식회사 ○○○

임원퇴직금지급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38조의 위임에 따라 주식회사 ○○○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- ① 이 규정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이사(대표이사를 포함한다)와 감사로서 회사의 업무에 상시 종사한 임원(이하 "임원"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- ② 임원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퇴직금은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과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에 따른다.
- ③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회사와 따로 약정한 임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규정의 성격)

이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라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서, 특정 임원이 아닌 모든 임원에게 계속하여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다.

제2장 퇴직금의 산정

제4조(지급 사유)

- ①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.
- ②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.
 1. 임기만료, 사임, 해임 또는 사망으로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
 2. 회사의 조직변경, 합병,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
 3.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
- ③ 임원이 임기만료 후 연임되거나 같은 회사 안에서 직위만 변경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.

제5조(퇴직금의 산정)

- ①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.

$$\text{퇴직금} = \text{퇴직 전 3년간 연평균 총급여} \times 10\text{분의 } 1 \times \text{근속연수} \times \text{지급배수}$$

② 제1항의 "퇴직 전 3년간 연평균 총급여"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(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속기간)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를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총급여는 기본급여, 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으로서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(비과세소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으로 한다.

③ 지급배수는 퇴직일 현재의 직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 따른다.

직위	지급배수
대표이사	○배
사내이사	○배
감사	○배

④ 퇴직 전 1년 이내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본급여가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 전의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제2항의 총급여를 계산한다.

제6조(근속연수의 계산)

- ① 근속연수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12로 나눈 값으로 하며,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.
- ② 연임된 임원의 근속연수는 각 임기를 합산한다.
- ③ 직원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.
- ④ 비상근임원으로 재임한 기간과 제8조에 따라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퇴직위로금)

-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율 이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위로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 1.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: 제5조에 따른 퇴직금의 100분의 ○○
 2.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: 제5조에 따른 퇴직금의 100분의 ○○
- ② 제1항의 퇴직위로금은 이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의 일부로 본다.

제8조(중간정산)

- ① 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중간정산 후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한다.

제3장 지급과 제한

제9조(지급절차와 시기)

- ① 대표이사는 임원이 퇴직한 때에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명세를 작성하여 이사회(이사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)에 보고하고, 그 확인 결의를 받아 지급한다.
- ②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. 다만, 회사와 퇴직 임원이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퇴직금은 퇴직 임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예금계좌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

제10조(금전 외의 자산에 의한 지급)

- ① 퇴직 임원의 요청과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보유한 보험 계약, 유가증권 그 밖의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자산의 가액은 지급일 현재 관계 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.

제11조(퇴직급여 재원의 적립)

회사는 임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거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할 수 있다.

제12조(지급의 제한)

-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1.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쳐 해임된 경우
 2.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
- ②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퇴직 임원에게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채무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제13조(수령인)

- ① 퇴직금은 퇴직한 임원 본인에게 지급한다.
- ② 임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「민법」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.

제4장 보 칙

제14조(세법상 한도와와의 관계)

- ① 이 규정에 따른 퇴직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이 규정에 따른 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.

제15조(규정의 개정)

- ①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.
- ② 개정된 규정은 개정일 이후의 근속기간분에 적용하고, 개정일 전의 근속기간분은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.
- ③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부칙에 개정일과 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을 적어 연혁으로 누적하여 관리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 년 월 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규정 시행 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그 기간 중 유효하였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르고, 그러한 규정이 없었던 기간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.

【제정 · 개정 연혁】

구분	시행일	결의 주주총회일	주요 내용
제정	20 . . .	20 . . .	최초 제정
개정			